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독 점 규 제 및 공 정 거 래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한덕수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에 있는 ‘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’을 ‘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’과 ‘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·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’으로 축소하고, 친족 범위에 ‘동일인이 「민법」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’를 추가함(안 제4조제1항 제1호가목)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11. ~ 9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(이하 “친족”이라 한다)

- 1) 배우자
- 2) 4촌 이내의 혈족
- 3) 3촌 이내의 인척
- 4)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·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
- 5) 동일인이 「민법」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나목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호”를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각 호”를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 각 호”로 한다.

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2항제1호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호가목”을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1호가목”으로 한다.

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6항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호”를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⑤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의4제1항제6호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”로, “같은 조 제1호”를 “같은 항 제1호”로 한다.

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5제5항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”를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”로 한다.

제337조제1항제1호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각 호”를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 각 호”로 한다.

⑦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”를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업집단의 범위) 법 제2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”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.	제4조(기업집단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(이하 “동일인관련자”라 한다)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(「상법」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5조,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)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가. 배우자,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(이하 “친족”이라 한다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(이하 “친족”이라 한다) 1) 배우자 2) 4촌 이내의 혈족 3) 3촌 이내의 인척 4)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

나. ~ 마. (생 략)	<u>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</u> <u>있는 5촌·6촌인 혈족이</u> <u>나 4촌인 인척</u> 5) <u>동일인이 「민법」에 따</u> <u>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</u> <u>자의 생부나 생모</u> 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843